

‘신용운영자금 인터넷 신청제도’ 확대 시행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명국)은 지난 10월 11일부터 조합원사가 신용운영자금 신규 융자를 신청할 경우 조합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 홈페이지 온라인 지점을 이용하여 신규 융자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용운영자금 융자금 인터넷 신청제도’를 개선하여 확대 · 시행합니다.

그동안 신용운영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대체 업무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했으나 이번에 신규 융자 신청업무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인터넷 신청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앞으로는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조합원사 사무실에서도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규 융자 신청의 경우 조합원사는 신규 융자 신청일 전일, 지점에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을 팩스로 송부한 후 융자 가능여부를 지점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한 후 조합 홈페이지(www.seolbi.com)에 접속하여 신규 융자를 신청하게 되며, 온라인 지점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사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 후 조합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합원사가 이용 중인 기존 신용운영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및 대체업무 등은 신규 융자신청과 달리 신청 당일에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 또는 창구 방문 중 선택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신용운영자금 융자금 인터넷 신청제도’ 확대 시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융자신청 업무를 위해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조합원사의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조합원에게 업무처리의 편리성 및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발굴 ·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보증 및 융자제도 개선 안내

(제도 시행일 : 2011. 10. 1)

대리인 약정 위임제도 도입과 담보어음 징구 폐지 등 조합 이용시 불편함을 느끼셨던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조합원사에게 최선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증 · 융자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1.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등 담보약속어음 징구 폐지

- 담보종류 : 은행도일람출급약속어음, 공정증서부약속어음, 당좌수표
- 대상 : 신용운영자금 및 선급금등 지급기타 보증이용 조합원
- 현행 :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에 한하여 담보 약속어음 징구 생략
- 개선 : 모든 조합원에 대하여 담보약속어음 징구 제도 폐지

2. 가설공사 계약보증 해제절차 간소화

- 현행 : 보증채권자의 준공확인원 제출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시 계약보증 해제
- 개선 : 계약금액 1억원 이하인 가설공사에 대한 계약보증 해제절차 간소화
- 가설공사와 직접 관련된 주된 공사가 준공된 경우

- 보증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 가설공사 : 건축공사에서 본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일시적인 설비를 하는 공사로 공사장 사무실 · 노무자 숙사 · 공사용 가건물공사 등을 말함

• 해제제한 : 당해 조합원 부도 등 조합채권 침해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준공확인서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불가

3. 도급 계약상의 하자보수책임기간 초과 보증서 발급 방법 개선

- 대상 : 하도급공사의 하자보수보증
- 현행 : 하자보수책임기간은 도급계약상의 하자보수 약정기간을 보증
- 개선 : 약정기간을 초과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을 요구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발급동의서를 정구받아 보증서 발급

- 보증채권자가 하도급공사의 준공일부터 원도급공사의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가산하여 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선

4. 하자보수보증서 선발급 기간 확대

- 현 행 : 공사 준공전 준공 관련 구비서류로 보증채권자 하자보증서 제출 요구
(30일 이전 발급 가능)
- 개 선 : 선발급 기간 확대
(선 발급 기간 : 30일 → 3월)

5. 한도거래약정 등 약정 체결시 위임제도 도입

- 원 칙 : 한도거래약정 등 약정 체결시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 직원 입회하에 직접 기명날인
- 대표자 본인이 조합 직원 입회하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사 직원에게 대표자가 약정체결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의 법인 및 개인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위임장을 징구한 후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이 약정 업무를 수임받아 약정체결
 - 단독 대표자인 경우에도 대표자가 작성한 위임장 제출시 약정 위임 가능

6. 담보제공시 할증 수수료 미적용

- 대상보증 : 계약보증과 하자보수보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보증
 - 공공공사의 경우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조합원 또는 자연인이 입보하는 경우
 - 공공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대하여는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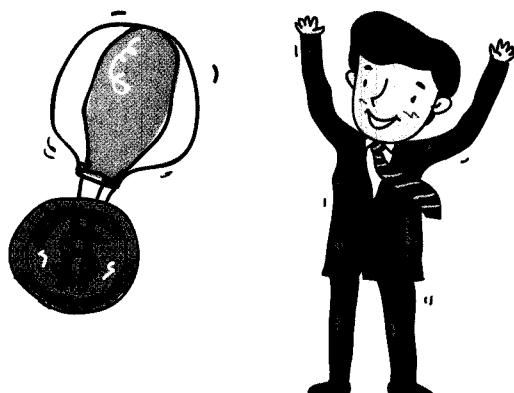
금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조합원 또는 자연인이 입보하는 경우

- 하자보수보증
 -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조합원 또는 자연인이 입보하는 경우
- * 조합원 및 자연인 입보자격
- 조합원 : 출자지분액 범위 내 (지분액 5억원 미달시 5억원까지 연대보증 가능)
- 자연인 : 재산세 10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는 임·직원 또는 대표자의 직계 존속 등 (1인당 3억원까지 연대보증 가능)

7. 운영자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범위 확대

- 현 행 : 1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 개 선 : 연대보증인이 동일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연장처리

세부적인 제도개선 내용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조합원께서 거래하시는 지점 또는 영업소, 업무부(02-6240-1035~10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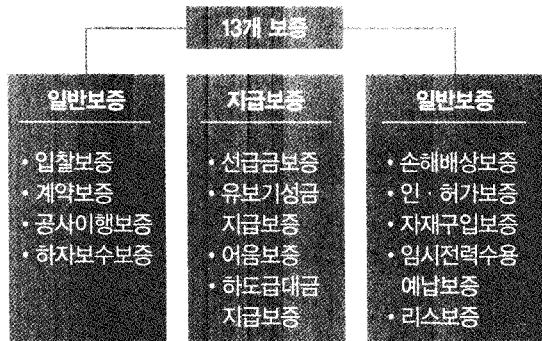




“보증업무” 일반안내

1. 보증의 종류와 내용

가. 보증의 종류



2. 보증대상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보증별 채무를 보증대상으로 합니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산업
-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 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3. 거래방법

조합원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조합과 한도(개별) 거래용채무약정을 체결하시면 업무거래가 가능합니다.

4. 소액보증제도운영

가. 소액보증제도란

-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은 일반보증한도를 이용하여야 하나
- 조합원들의 출자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고자 건당 보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에 대하여는 입찰보증 한도(7배)중 4배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중이며,
- 계약금액 증액으로 추가보증시 당초 보증 금액과 합산한 보증금액이 건당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대상보증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 보증수수료

- 계약보증 요율 : 년 0.8%
- 하자보수보증 요율 : 년 0.6%
- 최저 수수료(건당) : 6,000원

5. 고액보증 심사

가. 심사대상

- 대상보증 : 계약보증
- 계약금액 50억원 초과 및 보증금액 5억원 초과하는 민간공사(공공하도급 포함)
 - 입찰참여자의 평균입찰금액 대비 90% 미만 낙찰공사
 - 예정가격 대비 90% 미만 낙찰공사
 - 입찰자의 투찰금액 및 예정가격 파악이 불가능한 공사

- 심사제외
 - 수의계약공사
 - 선급금보증(선급금 공동관리제도에 의하여 관리)
- ④ 공사내역서(공종별) (엑셀 등 PC파일로 제출)

나. 심사절차

- (1) 조합원이 거래지점에 보증신청
 - 제출서류 ① 예정가격
 - ② 입찰참여자 투찰금액 및 명단
 - ③ 계약서, 계약조건(설계변경, 물가상승 관련조항)
- (2) 지점심사
 - 예정가격 및 평균입찰금액 대비 90% 이상 : 보증서 자체 발급
 - 예정가격 및 평균입찰금액 대비 90% 미만 : 본부심사 의뢰
- (3) 본부심사 : 보증 신청일부터 3일이내 심사하여 거래지점에 결과통보
- (4) 심사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담보 징구 또는 연대보증인 입보 후 보증서 발급

다. 심사항목

- 신용평가 60점, 수행평가 40점 (저가위주 심사)
 - 낙찰자가 내역서 제공거부 : 해당항목 최저점수(0점) 부여

심사분야	심사항목	심사기준 및 배점	
신용평가 (60점)	신용등급	조합신용등급	배점
		AAA	60
		AA ~ A	55
		BBB ~ B	45
		CCC 이하	35
	시공능력 평가	1배 이내	10
		1배 초과 2배 이내	8
		2배 초과 3배 이내	6
		3배 초과	4
	계약조건	설계변경	유 5 무 2
		물가상승	유 5 무 2
		적정성	10
		부족의심	5
수행평가 (40점)	자재비 적정성	부족	1
		내역서 미제출	0
		적정	10
		부족의심	5
	노무비 적정성	부족	1
		내역서 미제출	0
		적정	10
		부족의심	5
		부족	1
		내역서 미제출	0
계		100	

라. 보증인수조건

- 산출된 평점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조합원 입보, 자연인 입보 또는 물적 담보 중 선택

심사등급	산 출 점 수	보증인수조건(선택)	
		물적 담보	인적 담보
1등급	85점 이상	면 제	면 제
2등급	85점 미만 ~ 75점 이상	보증금액의 10%	
3등급	75점 미만 ~ 60점 이상	보증금액의 20%	조합원 1인 이상 또는 자연인 1인 이상
4등급	60점 미만 ~ 50점 이상	보증금액의 30%	
5등급	50점 미만	보증금액의 40%	

- 조합원 : 지분액 한도로 입보(지분액 5억 원이하는 5억 원 한도)
- 자연인 : 1인당 3억원 한도로 입보(재산세 납세실적 10만원 이상,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이나 임직원 등)
- 물적담보 : 예·적금, 부동산 등

6. 선급금공동관리 제도

가. 도입배경

- 2009년도부터 정부의 경기부양 시책에 의해 조합원의 선급금 수령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보증사고 증가
- 이에 따라 보증지급금에 대한 부실채권의 증가가 예상됨으로 이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수령한 선급금 일부를 질권설정 등에 의하여 공동관리하는 방안 시행(2010. 8. 16)

나. 공동관리 대상금액

- (1) 신용등급별 기준금액(선급금액) 이상시

신용등급별	AAA~A	BBB~B	CCC~C
기준금액	5억원	3억원	2억원

※ 계약금액 대비 선급금 지급률이 10% 이하인 경우 공동관리 대상에서 제외

- (2) 공동관리 금액 결정(선급금 수령율별 차등적용)

신용등급별 선급금 수령비율	AAA ~ A	BBB ~ B	CCC ~ C
10%초과 ~ 30%미만	20%	30%	40%
30%이상 ~ 40%미만	25%	35%	45%
40%이상 ~ 50%미만	30%	40%	50%
50%이상 ~ 60%미만	35%	45%	55%
60%이상	40%	50%	60%

다. 공동관리 방법

- 현금담보 ⇒ 현금예치
- 조합원 정기예금통장 ⇒ 정기예금통장 질권설정
- 부동산 등 ⇒ 근저당권 설정 등
- 약속어음(진성어음) 수령시 ⇒ 조합 어음수탁통장에 수탁
- 전자외상매출채권으로 수령시 ⇒ 다른 공사의 기성금 또는 준공금으로 수령한 진성어음 중 조합 어음할인 대상
-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어음〉
 - 건설자재대금의 전도를 위하여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 타 공사의 선급금으로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 만기일이 담보제공일부터 180일을 초과한 어음

라. 공동관리 선급금액의 반환 기준

기 성 률	반환금액
20% 이상	공동관리 금액의 50%
50% 이상	잔액 전액

7. 저가공사 보증심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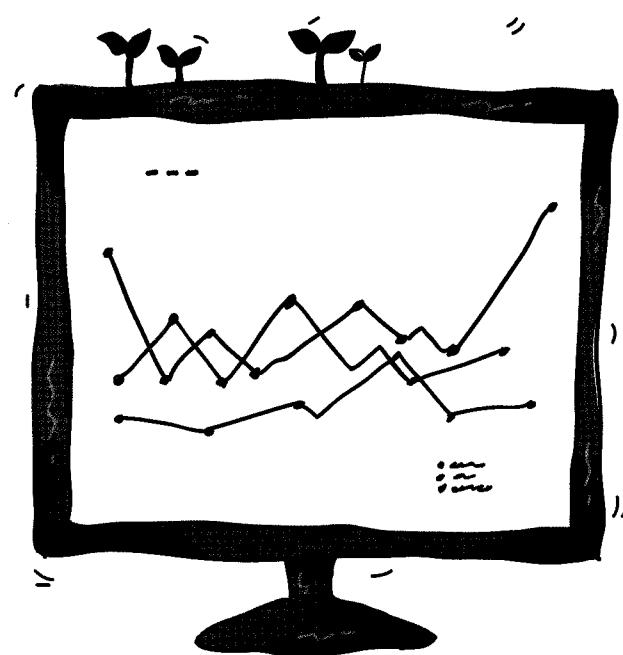
가. 도입배경

업계의 건전한 공사수주 관행을 유도하고 조합의 보증손실 예방을 위하여 저가수주공사에 대한 수수료 할증·담보제공 및 업무거래 제한 등 저가공사 보증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2009. 7. 1)하고 있습니다.

나. 심사대상

(1) 심사대상 및 입찰자료 파악

- 종합공사업체가 도급(원·하도급)한 30억원 이상의 공사 중 입찰참여자 또는 설비협회가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저가로 신고·제보한 경우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수주한 공사로서 저가소지가 있는 경우
- ※ 보증신청시 조합원이 직접 보증신청 화면에 입찰참여 조합원 명단 등 입찰자료를 입력하도록 되어있고, 특히 저가소지가 있을 때에는 저가심사를 한 후 보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2) 대상보증 : 계약보증 및 선급금보증

다. 저가판정 기준

- 낙찰금액이 평균입찰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저가공사로 판정합니다.

(2)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평균입찰금액은 4개사 이상 입찰참여자의 입찰금액이 파악된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 중 낙찰금액과 최고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을 합산(최저 2개사 이상)하여 나눈 금액

라. 저가판정시 제재

저가판정시 등급에 따라 수수료 할증 및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저가판정 중복시 중첩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